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99
----------	-------

발의연월일 : 2025. 12. 24.

발의자 : 김승수 · 조정훈 · 박정하
나경원 · 강명구 · 김재섭
김은혜 · 이철규 · 최수진
김성원 · 윤재옥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초·중·고 및 대학에서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인 학생 예술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예술인이 법률상의 정의에는 포함되지만 이 법은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등 성인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예술인이 수업·입시·사교육 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구제절차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학생예술인도 예술인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예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등 학생예술인을 위한 권리보장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예술인의 범위에 초·중·고 및 대학에서 예술활동과 관련된 교육
· 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교로 진학하기 위하여 학원 등으로부터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을 포함함(안 제2조제2호).
- 나. 예술교육기관의 범위에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원·교습소를 포함하고, 예술교육기관도 시정명령 및 불이익조치 금지 명령의 대상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 제34조 및 제38조).
- 다. 학생예술인에게 교육·훈련 등을 시키는 사람을 예술교육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의2 신설).
- 라. 불공정행위의 금지 대상자로 예술교육자를 포함하고, 불공정행위의 대상으로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예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함(안 제13조).
-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 바. 위원회에 학생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부터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

다. 나목에 해당하는 학교로 진학하기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 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

7의2. “예술교육자”란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예술인(이하 “학생예술인”이라 한다)에게 교육·훈련 등을 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증진”을 “증진 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술지원기관”을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예술지원기관”을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자”로 한다.

4의2.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예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3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5항 중 “분과위원회와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

위원회를”을 “분과위원회,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 및 학생예술인 권익보호 분과위원회를”로 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를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술지원기관”을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예술지원기관”을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p> <p>가. (생 략)</p> <p>나.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p> <p><신 설></p>	<p>제2조(정의)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부터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p> <p>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p> <p>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p> <p>다. 나목에 해당하는 학교로 진학하기 위하여 「학원</p>

	<p><u>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 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학원 · 교습소 및 개 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육 · 훈련을 받는 사람</u></p>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예술교육기관”이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관 중 예술 활동을 위한 교 육 · 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5. -----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u><신 설></u>	가. 「초 · 중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학교
<u><신 설></u>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u><신 설></u>	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u><신 설></u>	라.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 소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7의2. “예술교육자”란 제2조제

<신 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략)
⑤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예술인 권리보장 분과위원회와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⑥ (생략)

제34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2조제10호라목에 해당하는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를 한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에

제15조의2(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분과위원회,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 및 학생예술인 권리보호 분과위원회를-----.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시정명령) ① -----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
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의한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가 제
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
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38조(불이익조치 금지) ① · ②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또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조치의 중지, 그

② 예술
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불이익조치 금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3)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